

양축가의 종합소득세 어떻게 확정되나?

소득세는 개인이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정부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예납 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1/3에 해당하는 세액을 9월과 12월에 먼저 납부하게 된다.

이와같이 중간예납한 것을 다음해 5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을 결산하여 정부에 확정 신고하게 되는데 확정 신고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연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을때는 환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을 예를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소득 금액의 계산

가. 기장을 할 경우

- ① 총수입 금액 70,000,000
- ② 필요경비 64,800,000
- ③ 소득금액 (①-②) 5,200,000

나.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총수입 금액 × 소득 표준율

2. 소득 공제

- ④ 기초공제 300,000
- ⑤ 배우자 공제 420,000
- ⑥ 부양가족 240,000 × 가족수 (3인)
- ⑦ 장해자 300,000

⑧ 계 (④+⑤+⑥+⑦) 1,740,000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③)에서 소득공제금액 (⑧)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5,200,000 - 1,740,000 = 3,460,000 \quad (\text{과세표준})$$

○ 세율은 별첨 기본세율을 보고 과세표준 3,460,000에 해당되는 10%를 곱하면 된다.

○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과세표준 } 3,460,000 \times \text{세율 } 10\% &= 346,000 \\ - \text{누진공제} & 86,000 \end{aligned}$$

⑨ 산출세액 260,000

4.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결정세액의 계산

⑩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begin{aligned} & \times \frac{\text{기장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10 \\ & = 260,000 \times \frac{5,200,000 \text{ (③)}}{5,200,000 \text{ (③)}} \times 10 \\ & = 260,000 \end{aligned}$$

⑪ 사업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text{공제율}$$

※ 공제율

- 연간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 10%
- 연간소득금액 36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5%

$$\begin{aligned} 260,000 \text{ (⑨)} \times \frac{5,200,000 \text{ (③)}}{5,200,000 \text{ (③)}} \times 5\% \\ = 13,000 \end{aligned}$$

⑫ 결정세액 (⑨-⑩-⑪) 221,000

5. 기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⑬ 제 1기 중간예납 100,000
- ⑭ 제 2기 중간예납 100,000
- ⑮ 자진 납부할 세액 (⑫) - (⑬) - (⑭) 21,000

6. 방위세의 계산

방위세의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인 때는 10%, 84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20%이다.

⑯ 221,000 (⑫) × 10% = 22,100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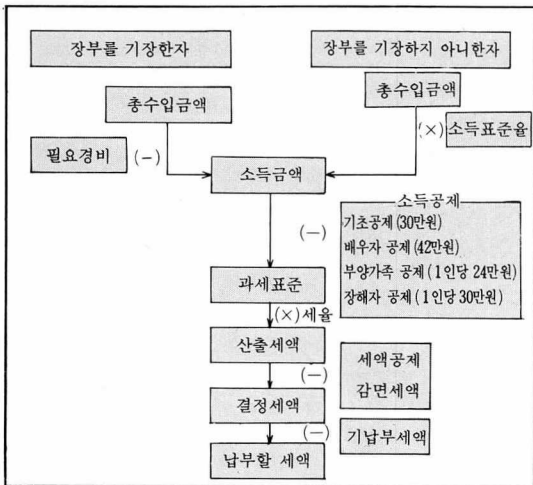


그림. 종합소득세 세액산출과정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을 개략한 것인데 축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frac{2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 3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농(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

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 6조 제 2항 제 3호)

7. 축산업의 비과세 범위

1. 농가의 농민이 영위하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은 전업이든 부업이든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총 수입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며 (국세청 유권해석) 5월 중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2. 목장을 경영하면서 세무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 조사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농가부업적인 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4. 다음 표의 축산의 범위에 열거한 여러 종류의 가축을 동시에 사육할 경우에도 (“예” 젓소 18두, 돼지 120마리, 닭 2,500수를 동시에 사육) 종류별로 농가 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규모 이내이므로 모두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5. 그러나 상기와 같이 여러 종류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한 종류라도 농가부업 범위를 초과하면 (“예” 상기 예 중 닭 3,100수를 사육할 경우) 다른 종류의 소득까지 모두 농가 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가 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 (제 6조의 2 관련)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젓 소	2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30마리	
돼 지	150마리	
산 양	150마리	
면 양	150마리	
토 끼	3,000마리	
닭	〃	
오 리	〃	